

대법원 2020. 2. 13 선고 2019다2912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2. 13 선고 2019다29129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10. 4 선고 2019나634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A

피고, 상고인B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티(K&P)

담당변호사 김태진, 박소영

판결 선고 2020. 2. 13.

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10. 4. 선고 2019나63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

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노정희

주심대법관박상옥

대법관안철상

대법관김상환